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in DAEJEON

일시 2017년 8월24일 (목) 14:00

장소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모여서100

공동주최 희망제작소, '시민사회활성화 전국 네트워크'주비위원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시민센터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종교계자원봉사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공동주관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마을활동가포럼/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광역시자원봉사자지원센터/사회적경제연구원사회적협동조합/대전시민사회연구소

프/ 로/ 그/ 램/

- 진 행 : 이인세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 좌 장 : 김제선 / 희망제작소장

14:00 ~ 14:10 토론회 취지 및 주요 참석자 소개

14:10 ~ 15:00 물꼬뜨기

발제1. : 주성수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장
「문제인 정부 국정 비전과 시민사회 협력과제」

발제2. : 정선애 / 서울시NPO지원센터장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15:00 ~ 16:00 생각나누기

토론 : 조세종 / 소셜경영연구소장

토론 : 양흥모 /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토론 : 김명수 /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토론 : 장정미 /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상임대표

토론 : 김종남 /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16:00 ~ 16:30 생각모으기

주제발표1 _____

문재인 정부 국정 비전과 시민사회 협력과제

주 성 수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장

정부와 시민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협력

2017.8.24

주 성 수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제3섹터연구소장)
sungsoo@hanyang.ac.kr

시민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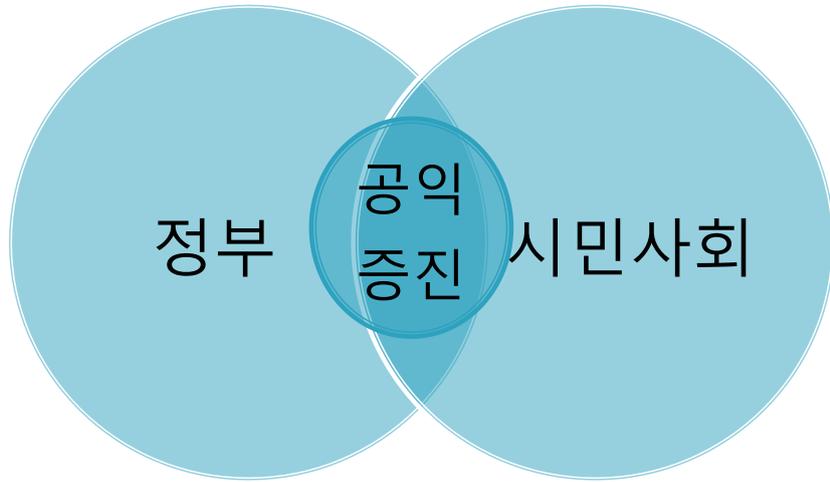
중소상공인 혁신위원 민주주의 후보자 광주시 경실련
방송사 참여연대 부산 김수현 청와대위원장
참여정부 참여연대 이사장 기자회견하승창 정상화
대변인 간담회 사람들 정치권 문재인 대통령
노동계 유권자 전문가 지원자 백지화 변호사 문재인 정부 토론회

시민단체?

인천시 성명서 천안시 경실련 전문가
시의회 후보자 대구시 참여연대 환경부
감사원 공무원 기자회견 청와대 고발장
박근혜 문재인 정부 광주 문재인 대통령 지역사회
환경운동연합 기본료 폐지 부산 소녀상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지자체 청주시 주민들 K-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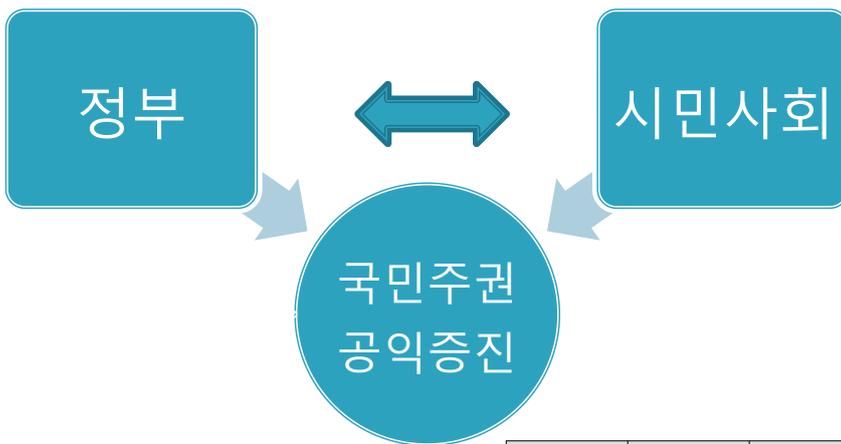
1990-2016 ->

노무현 당선자 한나라당 눈엣가시
경실련 인지방정
정책간담회 본격화 참여연대
자못 다른 양상 보고회
NGO 지역개발 정치세력화
민주화 인수위 정치권 경관고체
출신 인사들 대립 구도 우리나라
도덕성 대통령직인수위
경인운하사업 달리 분위기 불법영위
정보화 순수성 위원장



3

정부와 시민사회는 왜 협력하는가? 공익증진을 위한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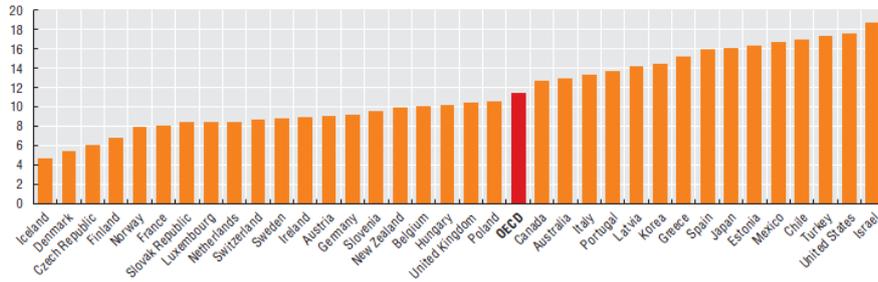
	중앙정부 신뢰	불신	국회 신뢰	불신
NGO 신뢰	32.4%	36.2%	15.6%	52.9%
불신	8.5%	23.2%	3.3%	28.3%

4

한국의 공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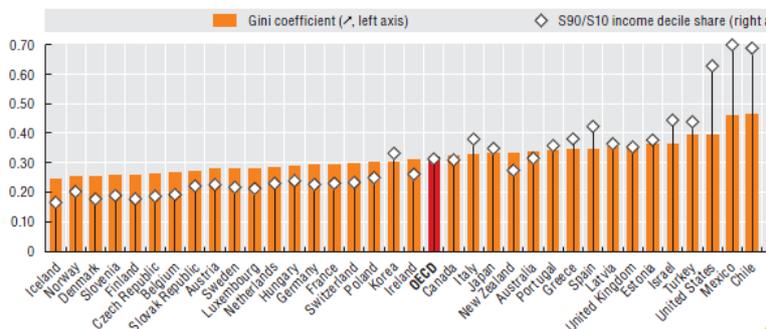
▶ 상대적 빈곤율 (14.6%)

Percentage of persons living with less than 50% of median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in 2014 (or nearest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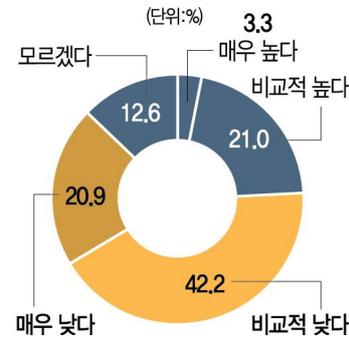


▶ 소득불평등 (Gini)

Gini coefficient of household disposable income and gap between richest and poorest 10%, in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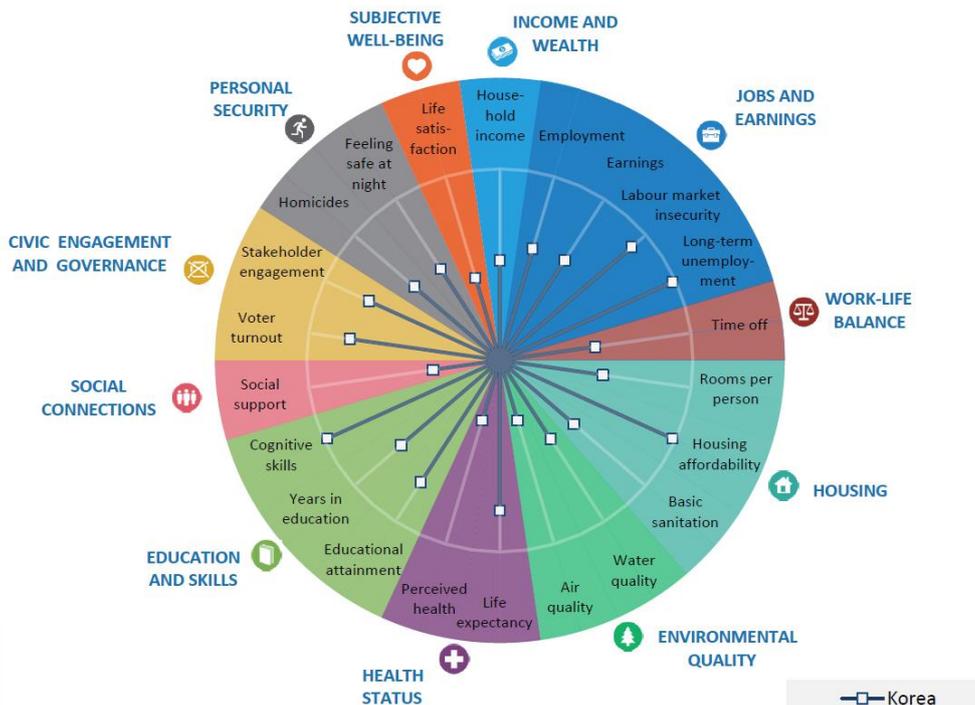


통계청(2017.7) 20대에게 물은 계층 이동 가능성



한국인의 웰빙 : OECD 34국 중 중하위

Current well-being in Korea



국민의 차별 경험과 취약층의 인권

구분	2011년	2016년
1) 성차별	15.7	12.3
2) 임신 혹은 출산에 의한 차별	5.7	4.1
3) 성희롱 혹은 성추행 경험	9.2	4.6
4) 종교·사상·정치적 입장의 차이로 인한 차별	3.8	3.0
5) 장애로 인한 차별	3.5	1.5
6)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	18.5	11.6
7)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인한 차별	11.5	9.7
8)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17.4	11.5
9)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5.4	4.4
10)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민족으로 인한 차별	1.9	0.5
11) 신체조건을 이유로 인한 차별	8.4	7.0
12) 혼인상황(미혼, 기혼, 이혼 등)으로 인한 차별	3.7	2.0
13) 가족상황(편부모, 미혼모)으로 인한 차별	2.7	1.5
14)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1.0	0.5

구분	2011년	2016년
1) 장애인	2.4	2.8
2) 비정규직 노동자	2.2	2.4
3) 외국인 노동자	2.0	2.1
4) 결혼이주여성	2.2	2.4
5) 여성	3.4	3.6
6) 미혼모	2.1	2.5
7) 아동·청소년	3.3	3.4
8) 노인	2.9	3.2
9) 병력이 있는 사람	1.8	2.2
10) 군복무자	2.7	2.9
11)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2.4	2.8
12) 성소수자	1.8	2.0
13)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2.3	2.4
14) 생활보호 대상자	2.5	2.7
15) 노숙자	1.8	2.1
16) 경찰 수사 중인 피의자	1.9	2.3
17) 구금시설 수용자	1.8	2.2
18) 전과자	1.7	2.1

7

공익의 개념 : 한국과 주요국 비교

- 1) 공익의 개념을 공익활동의 목록으로 제시 (5개국 공통점)
- 2) 목록에 제시된 활동을 하는 조직들을 법인으로 인정, 법인세 비과세, 소득공제 등 공익활동 우대(5개국 공통점).

	비영리(공익)법인 국제비교				
인정 기관	미국 IRS	영국 Charity Commission	독일 세무당국	일본 도도부현, 시	한국 주무관청
인정 대상 - 공익성	공익활동을 제시 (목록 12개)	공익활동을 제시 (목록 13개)	공익활동을 제시 (목록)	공익활동을 제시 (목록 20개)	공익활동을 제시 (목록 11개)
비영리성	이익이나 잔여 재 산의 사적 분배 금지	이익 증진 또는 영 리 목적 대가수수 활동 제외			
법인세 비과세 범위	고유사업	고유사업	고유사업	수익사업(34종) 이외	고유사업
기부금 우대 조치	소득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

8

공익 증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 법 제정의 이유

- ▶ 정부와 시민사회는 국민에게 봉사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익 수행의 책무를 공유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국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부 단독으로 국민의 사회서비스와 삶의 질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에 달해 있다. 일자리 부족, 취약층 생계곤란, 환경오염 등 국민의 권익과 공익을 저해하는 각종 사회문제들은 심각해지며 또 청년실업, 노동빈곤, 노인빈곤 등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 사회경제적 변화들로 인해 많은 전통적인 지혜와 가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부가 생산되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계층 상승이동’은 줄고, 삶의 질이 악화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 이런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 공익증진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국민적 요청을 받고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한정된 정부예산과 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공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공기관들과 시민사회조직들은 공익을 증진시키는 혁신적인 사업과 활동을 대폭 확장시켜, 사업 대상층 또는 대상지역이나 대상분야가 대폭 확장되어 국민 다수가 공익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고 최대한 포용되는 공익증진의 최대화와 가속화를 국정목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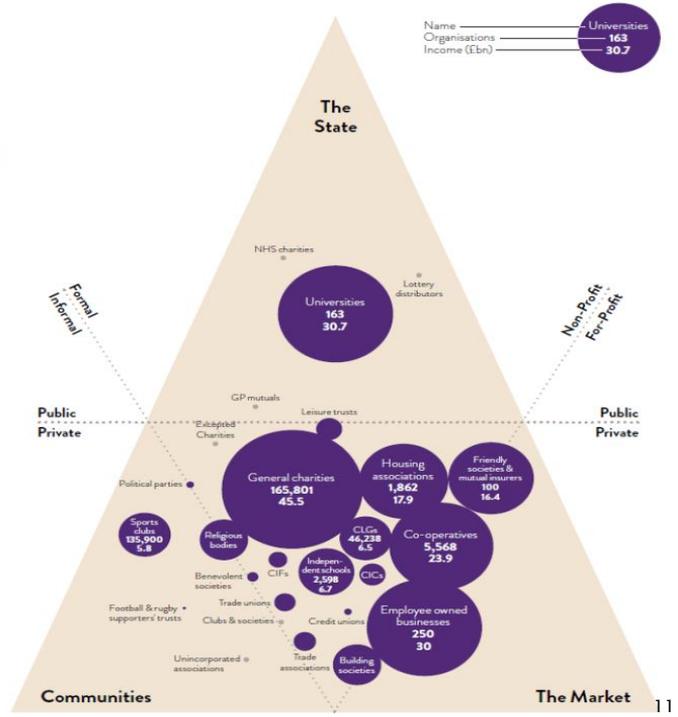
- ▶ 정부와 시민사회는 상호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공익증진을 위해 상호협력의 책무를 합의가능한 수준에서 법으로 규정해볼 수 있다. 법의 규정에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익증진의 책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정기적으로 수립해 실천하며, 실행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 검증을 받음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익이 실질적으로 증진되도록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법률 제정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민의 권익과 공익을 대표하는 책무를 공익증진의 결과와 성과로 제시하고,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사회조직들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공익증진의 결과와 성과를 제시해볼 수 있다.
- ▶ 정부를 대표하는 공공기관들은 정책과 사업의 기획-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가치 생산을 우선 고려해 시민사회와 협의해 추진하며, 동시에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시민사회조직들이 공익증진을 최대화, 가속화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 ▶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조직들은 공익 사업과 활동에서 정부와 협력해 대상층과 대상지역을 대폭 확장해 효율적으로 공익증진을 최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10

시민사회와 시민사회조직

Types of UK civil society organisations by income

- ▶ UN(2005) "국가와 시장과 별도로 존재하며,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제3섹터".
- ▶ 영국 시민사회 =
 - + 비영리법인
 - + 사회적경제
 - + NPO



▶ ICNPO (UN NPI) 12개 조직 유형

Table 2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Code	Field	Code	Field
1	Culture and recreation	7	Civic and advocacy
2	Education and research	8	Philanthropic intermediaries
3	Health	9	International
4	Social services	10	Religious congregations
5	Environment	11	Business and professional, unions
6	Development and housing	12	Not elsewhere classified

▶ 영국 UK Compact :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시민사회조직(civil society organisations) = 비영리단체(charities),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 마을공동체 단체(community gro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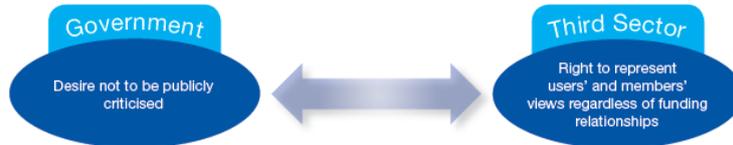
<한국>

제1안 (광의의 시민사회)	제2안 (협의의 시민사회)	영국 Compact NCVO "Civil Society"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포함)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중 공 익법인만)	Voluntary organizations (general charities)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cooperatives, CIC social enterprises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community groups

정부와 시민사회 : 자율성과 독립성

<제1 딜레마>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사회조직에 재정지원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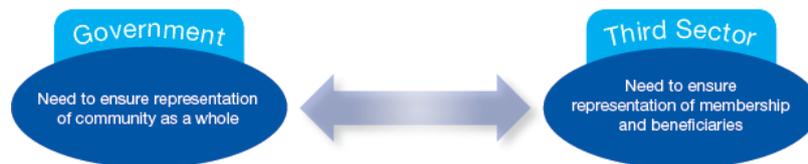


-> Compact는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민사회조직의 독립성으로 수용한다.

13

<제2 딜레마>

지역사회 전체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특정 대상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시민사회조직의 주장을 부당한 것으로 거부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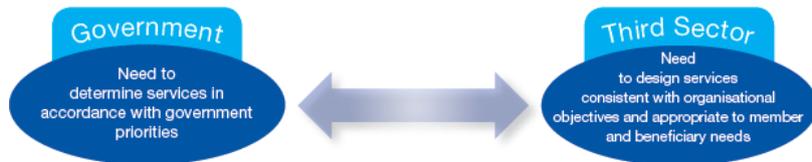


-> Compact는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들의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독립성을 인정한다.

14

<제3 딜레마>

공공서비스와 지출의 기획(디자인)에서 시민사회조직이 참여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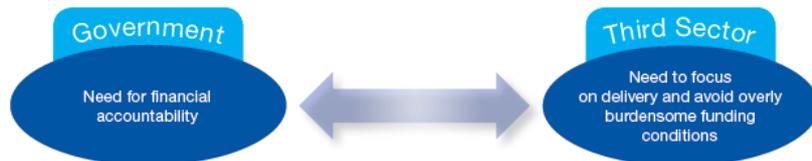


-> Compact는 서비스와 지출은 투명하고 책무적으로 시민사회조직의 참여로 조기 검증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15

<제4 딜레마>

재정 책무성을 중시하는 정부가 시민사회조직에게 지나친 서류와 절차를 요구하는 관료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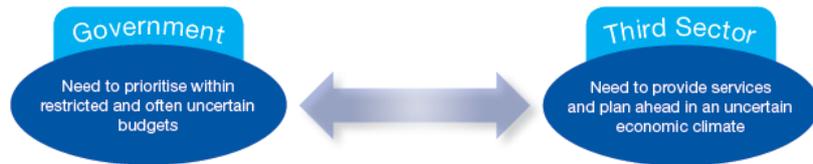


-> Compact는 과도한 관료적 절차에 의한 책무성보다는 시민사회조직의 서비스 공급 모니터링에 의한 책무성을 더 중시한다.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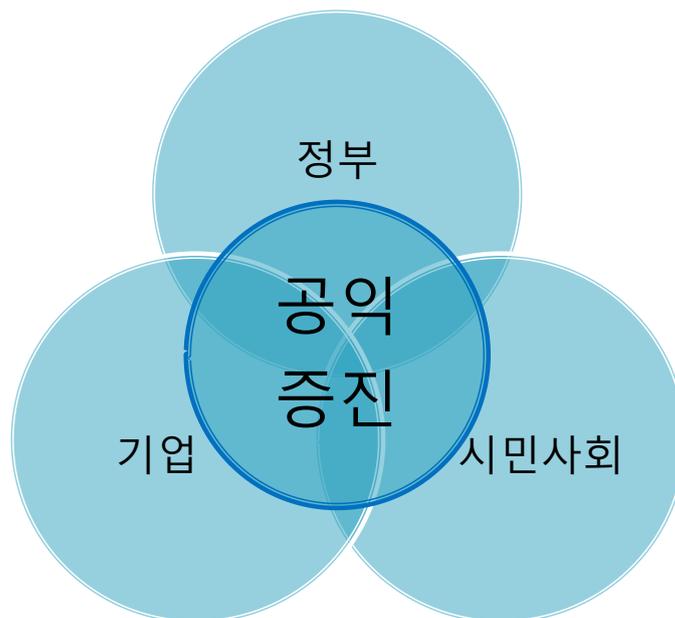
<제5 딜레마>

정부의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는 환경에서 시민사회 조직은 어떻게 미리 대비할 수 있는가?



-> Compact는 단기보다 중장기 기획과 재정지원을 권장한다.

17



18

주제발표2 _____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정 선 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

시민사회활성화과제

▪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활성화 간담회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

0. 들어가기전에

핵심질문

- 전문화되고 분절화된 시민사회조직이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을 통해 전환기 한국사회변화의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까?
- 이를 위한 핵심전략과 기반은 무엇일까?
- 그동안 시민사회조직의 활동/운동에 대한 평가에 기반, 이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
- 전국 간담회는 새로운 시도이자 출발

무엇이 문제인가?

- 견제와 감시/사회서비스 제공 및 전달의 파트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복잡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을 만드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핵심
- 복잡한 사회문제는 섹터간(영역간) 협업, 다양한 실험, 장기지속성, 스케일업 등을 필요로 함.
=> 재원의 규모화, 사회적 인프라 활용, 시민참여기반 확대

무엇이 필요한가?

-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이를 통해 공익증진과 사회적 가치추구가 정부와 사회운영의 핵심원리가 되게 하는 것
- 시민사회조직에 훨씬 많은 권한이 위임되는 것이 필요. 수많은 새로운 공익생태계 활성화를 촉진
-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은 이를 담는 최소한의 그릇이자 출발

무엇이 달라지나?

- 공익증진과 시민사회활성화를 다루는 거버넌스로서 위원회
=> 일방적인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와 협력/ 지역단위 포괄
- 전담조직으로서 중앙(전국)재단. 지역 지원기관 과 기금 조성
=> 다양한 시민사회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생태계 조성)
- 시민사회 통계와 연구로 제3섹터의 사회적 가치 추산과 지원방향 도출
- 공익증진과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단위에서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수립하고 다양한 협약체도의 발전(시민참여기제)
=> 좀더 많은 계획을, 좀더 많은 참여로!!!!
- 지역과 전국차원에서 시민사회 네트워크 확장
: 시민단체, 자원봉사, 마을, 사회적 경제 등
: 시민과 시민 사이의 연대 (동료시민)
- => 제3섹터 성장이 사회성장의 핵심 동력
- => 국가주도, 시장주도를 넘어서 시민이 공동체 발전의 핵심 행위자가 되기 위한 기반

1. 경과 및 기본방향

1. 경과 -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

- 2016년 5월 4일 - 2016년 6월14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TF’ 4차례 모임
- 2016년 6월30일 - 11월15일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로 확대 4차례 모임
- 2016년 6월1일,7월19일,11월15일
‘시민사회활성화 집담회’ 3회 개최

*간사단체 : 사단법인 시민

2.경과 - 시민사회활성화정책네트워크

- 2017년 3월 22일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제3섹터 정책 네트워크 1차회의
 - 한국시민센터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자원봉사 이음
- 2017년 4월 6일 -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대선 정책 제안서 발표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더혁신(공동위원장 하승창, 조현옥) 과 정책간담회
- 2017년 4월21일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시민사회위원회(위원장 박주현 의원)간담회
- 2017년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에 시민사회관련 공약반영
- 2017년 6월 7일 ‘시민사회활성화 제도혁신 전국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1차회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시민센터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종교계자원봉사협의회,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 2017년 6월22일,6월29일 시민사회발전 간담회 2차례 개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행자부 지방정책행정관실, 전문가, 시민단체관계자)
- 2017년 7월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5개년 계획 발표
- 2017년 7월~ 현재 시민사회발전TF 운영

*간사단체 : 사단법인 시민

3. 경과 - 국정과제

번호	10대 과제명	국정과제 제안	국정과제
1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제정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제정	-시민사회발전기본법제정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시민사회 지원조직으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등 시민사회 지원체계 구축
2	시민사회 협치를 위한 시민사회처 설치	독립적 민관거버넌스 기구 설치	
3	소득세1% 구분처 직접 선택으로 납세자 주권 강화	논의 필요	
4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비영리 공익법인 제도 혁신	공익법인법 개정안 제출	- 공익위원회
5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기부금품법 개정안 제출	(기부문화 활성화기부자 예우 강화 및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 지자체 책무 강화 - 기부금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법 제정	공제회법 발의안에 대한 대응	
7	제3섹터 성장과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금융활성화	사회혁신 기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수렴	사회혁신기금, 사회혁신기본법(가칭)
8	시민을 위한 공유제로 공공유희시설 활용	공익법인법 개정안 제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사회적 경제
9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공익적 일자리 확대	논의 필요	사회서비스공단, 청년고용의무제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10	시민성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정책 쇄신	논의 필요	18년부터 전국 단위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민주시민교육 * 국민참여예산제

4. 시민사회발전TF

□ 구성

-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
-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행자부 민간협력과
- 시민사회(전문가, NGO, 자원봉사, 마을)

□ 의제

- 시민사회발전기본법
- 기부활성화
- 보조금제도 개선

□ 기부활성화

- 기부금품법 개정안
- 세제개편(법인세법, 상속세법 등)
- 공익신탁제도 개선, 부동산신탁제도 신설(연구과제)
-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개선과 지정기부금제도 개선

□ 보조금제도 개선

- 보조금 배분시스템, 보조금 지급방식 및 관리방식 개선(e나라 도움)
- 새마을, 자충등을 기본법에 따른 일반지원으로

제정 방향

- 정책 수립,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보장과 시민사회의 성장 지원을 체계화
- 시민단체,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하게 분화하는 시민사회영역을 포괄
- 민관협력과 지원법의 기본법 위상으로 기금 조성, 전달지원기구등 인프라 구축과 실효적인 지원체계 구축

II. 제정 취지

1. 제정배경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단단체 설립과 보조금집행 근거법
- 공익법인법등, 비영리 사단,재단설립관련법은 비영리 공익활동 단체에 대해 규제중심의 접근
-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에 공익증진을 위해 좀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시민사회활력증진

=>시민사회 성장이 공동체 발전의 핵심 전략
=>시민사회조직은 문제제기에서 문제해결로!

2. 공익 증진 - 목적

- 정부와 시민사회는 국민에게 봉사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익 수행의 목표를 공유.
- 복잡해진 사회문제를 한정된 정부예산과 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공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과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상호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에 관한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공익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

3. 공익의 정의

-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증진 및 옹호
- 교육권, 주거권, 노동권, 문화권, 복지권 등 사회적 권리 증진 및 옹호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역량강화와 삶의 질 개선
- 여성·장애인·이주자·난민·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 및 육성
- 사고·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
- 학문·과학기술·문화·예술의 증진
- 교육·스포츠 등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풍부한 인성 함양
- 인종·성별,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부당한 차별 및 편견 예방과 평등사회의 증진
- 남북통일,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증진 또는 국제개발협력
- 지속가능한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활동
-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소비자의 권익 증진
-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권 보호

4.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확보
 - 공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평가 등을 시민사회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협약 체결 등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
- =>참여민주주의 기반 확보

5. 쟁점

- 국가-시민사회와의 협력필요성과 방향
: 그동안 협력 기제에 대한 평가
- NPO가 신 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일부로 통합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화
: 영국 캐머런 정부(보수당)의 빅소사이어티

참고 -영국 국가-시민사회협약

The screenshot shows a web browser displaying the 'Short History of the Compact' page on the Compact Voice website. The page title is 'SHORT HISTORY OF THE COMPACT'. A navigation menu on the left includes 'About us', 'Meet the team', 'Our board', 'About the Compact', 'Short History of the Compact', 'Government departments and the Compact', 'Find your local Compact', 'Compact in text format', and 'Compact Q & A'. The main content area lists key milestones:

- 1998: Establishment of a national Compact
- 1999: Compact Codes
- 2000: Development of local Compacts
- 2007: Commission for the Compact established
- 2009: Compact refresh
- 2010: Compact renewal
- 2011: Closure of the Commission for the Compact
- The Compact at present

Below the list, a section titled '1998: Establishment of a national Compact' provides details: 'The first national Compact was established in 1998. It was developed following recommendations by an independent commission into the future of the voluntary sector, which was chaired by Nicholas Deakin and is often referred to as the Deakin Commission. The commission's report contained a key recommendation that:'

협약의 목적

An effective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CSOs) will help achieve the following outcomes:

1. A strong, diverse and independent civil society
2. Effective and transparent design and development of policies, programmes and public services
3. Responsive and high-quality programmes and services
4. Clear arrangements for managing changes to programmes and services
5. An equal and fair society

Compact 집행의 관리감독

- 1) Compact Voice는 Compact의 시민사회측의 목소리를 수렴, 전국 시민사회조직을 대표하는 NCVO(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sations)에 신설된 독립기관으로, 시민사회조직들이 공공기관들과 공조하도록 지원 역할.
- 2) 총리실(Cabinet Office)이 정부 부처별 Compact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시민사회청(Office of Civil Society)이 전담기관 역할.
- 3) 모든 정부부처가 Compact 전담관(Compact lead)을 두어, 부처내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역할.
- 4) Compact Voice와 Cabinet Office가 공동 작성한 공동행동계획(Joint Action Plan)에 따라 부처별 Compact leads의 역할이 부여. 양측이 매년 공동행동계획을 작성, 실천.
- 5) Compact leads, Compact Voice, Cabinet Office 삼자가 분기별 회의를 갖고 Compact를 점검, 토의.

Ⅲ. 규율 대상

1. 정의

- “공익”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 등 사회구성원 또는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의미
- “시민사회” 시민사회조직 또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정부, 비영리 활동 영역을 말한다
- “시민사회조직”란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법인, 단체, 모임 등의 조직

2. 규율대상

-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자원봉사단체
-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
-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을 받는 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아. 「공익신탁법」 제3조에 따라 공익신탁을 인가받은 단체
-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차. 「마을공동체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마을공동체)
-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 하. 그 밖에 공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쟁점

- 규율대상
 - 사회적 경제조직포함
 - 사회적 경제조직 중 사회적 협동조합만 포함
- 기본법이 있거나 (자원봉사) 만들어질 예정인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영역과의 관계
- 더 포함될 조직이 있는지?
 - 소비자기본법 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등록절차포함)

IV. 법의 위상

1. 민관협력 및 지원의 기본법

<기본원칙>

- 공익활동 수행과 조직 참여에 있어 비차별과 자발적 참여보장
- 시민사회조직과의 협력체계 구축
- 시민사회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 정책과 제도의 수립·시행·평가에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
- 정책과 제도의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이 수렴되고, 각종 지원이 지역 시민사회에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원의 기본원칙 천명

-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함이 없이 평등하고 보편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특정 단체에 대하여 중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민 공익활동의 다양성, 자발성, 시민사회조직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유, 단체 내부의 의사 결정, 업무처리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민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시민사회조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과 절차,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원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치적인 유착 등 부당한 조건을 대가로 한 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3. 지원의 실효성

- **(재정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사회조직의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 **(조세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조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
- **(우편요금, 통신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조직이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요금, 통신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거나 지원
- **(모금·홍보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조직이 시민 공익활동 수행과 관련한 모금 및 사업, 단체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법 제70조 제3항, 제8항에 따라 운용되는 공공채널, 공익채널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원

- (국·공유재산에 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증진 및 시민공익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민사회조직에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 (교육·훈련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공익활동과 시민사회조직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지속적 성장·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가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거나 이에 대한 지원.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의 성장·발전에 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공무원과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 (민주시민교육 근거)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훈련에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법인에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법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4. 쟁점

- 정부지원과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 운영비, 인건비 지원의 논리
- 지원에 관한 내용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개정하여 보완
- 세법 개정 보완

*권미혁 의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발의(2016.8.30)

V. 추진체계

1.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점검과 결과의 보고
- 공익법인의 인정에 관한 사항
- 공익증진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협약체결 등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
-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재단의 설립과 운영
-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 기금 조성방안과 기금운영 방침
-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의 성장·발전과 관련한 정책, 법제도 과제 발굴과 관련 제도 정비
- 시민사회 정보 공개 및 활용

구성

□ 구성

1. 정부위원 : 행정자치부 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 구성원으로서 시민사회조직 또는 시·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전문가위원 : 시민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위원장은 민간, 민간이 3/5 이상

2. 지역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지역위원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역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성장·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위원회에 심의·의결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도 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④ 그 외 시·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다.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기본계획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작성
- 시행계획은 매년 유관 부처가 작성
 1.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 중장기 추진 방향 및 방법
 2. 공익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협약체결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3. 시민공익활동의 다양성과 자발성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책과 수단
 4.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과 관련한 활동가,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복지제도 마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방안
 7.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 주요 추진과제

3.쟁점

- 위상
국무총리실(대통령) 산하 독립행정위원회 VS심의의결기구
- 독립성 보장
 - 기본계획 수립 주체와 수립 및 모니터링 방식
- 시민사회 영역 대표성이 반영되는 구조
-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 (사무국)
- 지역에서 통합적인 위원회 구축 가능성
(지역의 민관정책테이블 발전)

- 각 영역 협의체의 대표로 구성
 - 시민사회단체/환경, 여성, 권력감시 등
 - 자원봉사 /마을공동체/사회적 경제조직
 - 소비자단체/국제개발협력단체
 - 민간 모금/배분재단
 -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의 경우)
 - 민간 관련 연구소, 학회
 - 지역 대표성

-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시.군.구 등 아래로 부터 수립하여 상향식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
- 기본계획의 이행과 모니터링, 진단과 권고를 할 수 있는 방식과 주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 정부측과 시민사회 조직이 각각 독립적인 공익 증진과 시민사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사회 발전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고 확정

참고

국가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정부 + 시민사회 협의체, 대통령 소속)	
정부 소위원회 정부(총리실)	시민사회 소위원회 시민사회(전국네트워크)
지역공익증진위원회 (지자체 + 지역시민사회 협의체)	
공익증진 담당관 (공공기관에 임명)	공익증진 추진단 (시민사회 자율)
공익증진기금 (정부 + 시민사회 공동사업 공모)	

VI. 지원전담조직 및 기금

1.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재단

□ 위상

-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 사업을 위한 지원 전담 기구
- 재단법인
- 정부출연

주요역할

- 시민사회조직 네트워크 구성 및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원
-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관련 기금의 운영·배분
- 지역지원재단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조사
-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 관련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컨설팅
- 시민사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 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지역 지원조직

- (지역지원조직)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단, 센터 등 시·도 지원조직을 설치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군·구 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조직을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조직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관련조례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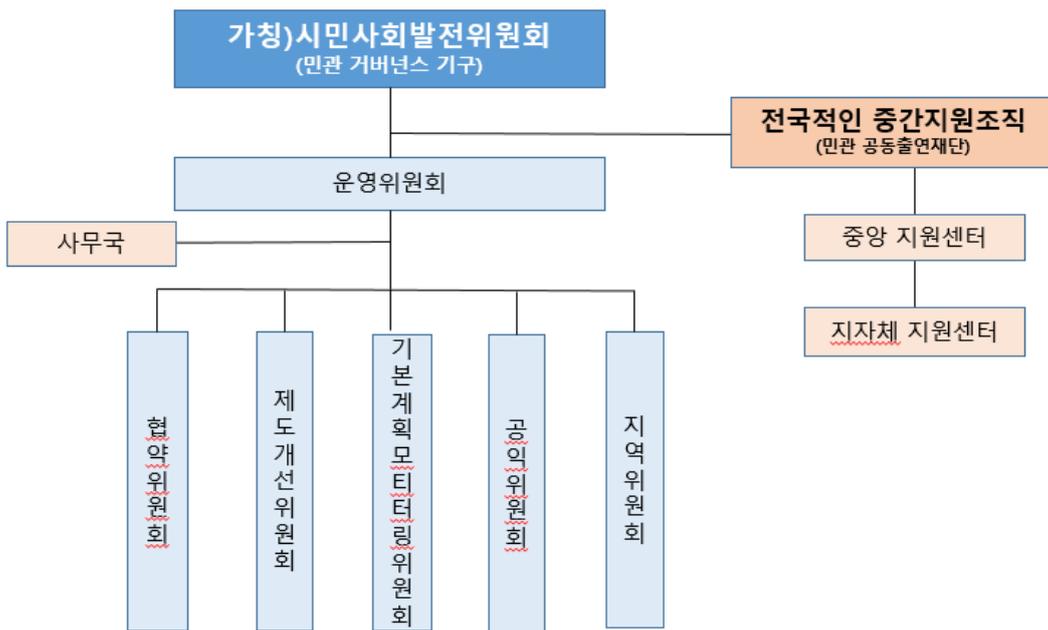
3. 시민사회공익증진기금

- 재원
 - 정부의 출연금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으로부터 전입금
 -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 쟁점

- 관련 기본법 제정.개정시 지원전담조직과의 관계 (마을진흥조직, 자원봉사진흥조직 등)
- 지역의 분야별 지원조직과의 연계 (NPO지원센터, 마을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등)
- 사회혁신기금과의 관계
- 분야별, 지역별 배분 파트너 협력체계 구축
- 출연기관/ 민간독립기관

4. 참고



Ⅶ. 입법추진전략

1. 입법 환경

- 긍정적인 측면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 전국적이고 분야를 망라한 시민사회의 관심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부정적인 측면
 - 국회 입법 환경 (자유 한국당)
 - 차기 총선(2020년) 의석변화

2. 시민사회 주체

- 아래로부터의 공론화 과정과 이견의 조정
- 다양한 영역간, 지역간 논의와 조직화 주체를 만드는 과정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
- 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 거버넌스 조직, 네트워크 조직의 핵심역할/ 네트워크 조직의 힘이 관건
- 물리적 시간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사회혁신과 시민사회에 관한 논의 필요

3. 추진전략

- 차기정부에서 시민사회청을 비전으로.
- 시민사회의 분절화를 뛰어 넘는 조직화를 핵심 전략으로.
- 2020년 과제로 놓고 충분히 숙성시킬 것인가?
- 정권초기 핵심적인 목표를 놓고 절충할 것인가?
- 이럴 경우 핵심적인 성취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 2017년 9월 정기국회 발의가 가능한가?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상호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에 관한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 등 사회구성원 또는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의미한다.

가.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증진 및 옹호

나. 교육권, 주거권, 노동권, 문화권, 복지권 등 사회적 권리 증진 및 옹호

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역량강화와 삶의 질 개선

라. 여성·장애인·이주자·난민·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 및 육성

마. 사고·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

바. 학문·과학기술·문화·예술의 증진

사. 교육·스포츠 등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풍부한 인성 함양

아. 인종·성별,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부당한 차별 및 편견 예방과 평등사회의 증진

자. 남북통일,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또는 국제개발협력 증진

차. 지속가능한 환경과 생태계 보호

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소비자의 권익 증진

파.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권 보호

하. 그 밖에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시민사회조직”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법인, 단체 모임 등의 조직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자원봉사단체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을 받는 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아. 「공익신탁법」 제3조에 따라 공익신탁을 인가받은 단체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차. 「마을공동체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마을공동체)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하. 그 밖에 공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시민사회”란 시민사회조직 또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정부, 비영리 활동 영역을 말한다.

3조(기본원칙)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공동의 노력을 통한 다음 각 호를 추구한다.

1.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벌,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 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참여
2. 공익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상호 협력 강화

3. 시민사회조직의 자율성, 독립성 보장 및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민사회조직 운영을 통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성장·발전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증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며 공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등을 시민사회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협약 체결 등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 제도의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 공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의 공익활동 또는 시민사회조직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함이 없이 평등하고 보편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특정 단체에 대하여 중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민 공익활동의 다양성, 자발성, 시민사회조직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유, 단체 내부의 의사 결정, 업무처리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시민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시민사회조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과 절차,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지원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치적인 유착 등 부당한 조건을 대가로 한 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 제도의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이 수렴되고, 각종 지원이 지역 시민사회에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조직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 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 위원회) ① 공익증진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민관협력(이하, ‘민간협력’이라 한다) 및 시민사회의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제13조 시행계획
- (2. 공익법인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과 시민사회 발전에 관한 예산 등의 확대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공익증진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협약체결 등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
5. 제10조에 따른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6.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정부 부처 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7. 시민사회조직의 공익증진 성과 평가 및 우수사례 공시와 연례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8.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따른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 기금 조성 및 기금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9. 중앙행정기관에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권고
10. 시민사회조직 관련 각 행정기관의 정보 취합 및 공개
12. 시민사회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3. 제19조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14. 제22조에 따른 교육 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2항 제12호 시민사회종합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할 수 있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에 따른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으로 하고 위원은 정부위원, 민간위원을 합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민간위원의 수가 5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정부위원 : 행정안전부 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 구성원으로서 시민사회조직 또는 시·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시민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위원장은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 1인으로 하며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⑤ 위원회 내에 정부위원회, 시민사회위원회, 기금심의위원회 등의 소위원회 및 사무국을 둔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소위원회, 사무국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위원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시·도 지역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시·군·구 지역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③ 그 외 지역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다.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재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시민사회조직의 협의체, 지역 시민사회조직 협의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시민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사회조직 네트워크 지원

2. 제4조 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

3.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관련 기금의 배분

4. 제11조에 따른 지역지원조직 및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지원조직에 대한

역량강화

5.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조사
 6. 시민의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7.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시민사회조직 관련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8.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컨설팅
 9. 시민사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0.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 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시민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다른 법률이나 정관에서 재단이 하도록 정한 사업
-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⑦ 재단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⑧ 그 밖에 재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지역 지원조직)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단, 센터 등 시·도 지원조직을 설치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군·구 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조직을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조직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관련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익증진 및 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공익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협약체결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3. 시민사회조직의 자유로운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과 수단
4. 시민사회 관련 통계 및 정보 수집과 제공
6. 시민사회 활동가,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복지제도 마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8.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9.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방안
10.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 주요 추진과제
11.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지역 중심의 민관협력과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지원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해당 시·도 지역위원회에 제출하고, 시·도 지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 기금

제15조(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 기금의 조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용자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으로부터 전입금)

2.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사업

2.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산하 기금심의위원회가 정한 사업

3.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의 기획 및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공모사

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7조(기금의 운영과 관리)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관리하되, 기금의 운영·관리에 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금심의운영위원회의 운영관리방침에 따라 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8조(기금운영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독립적인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구성할 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시민사회조직 지원 및 육성

제19조(재정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사회조직의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조세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조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국·공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증진 및 시민공익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민사회조직에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교육·훈련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가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에 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공무원과 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훈련에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법인에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법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훈련 및 교육기관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포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단체·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 설립 준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된 센터 설립위원회(이

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재단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재단 대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재단 대표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재단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시한)

토론

- 조세종** 소셜경영연구소장
양홍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김명수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장정미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상임대표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시민사회활성화 순회간담회 토론

김 명 수(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위원장)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 즉, 황금만능주의 팽배, 인간성 상실, 심각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가 유용한 수단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한다.

1970년대 초반 석유파동으로 인한 시장경제의 위기와 경제성장의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자원봉사는 전환기를 맞게 된다. 이 시기 이후 자원봉사의 정의에 내포된 의미와 특징을 정리하면 먼저 자원봉사 활동은 본질적으로 자발적·자주적일 것, 경제 논리보다 선행하여 사회개혁에 선도적 위치에 설 것, 그리고 법이나 규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로서 사회를 바르게 유도할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78년 미국 플로리다주 몰랜드에서 개최된 국제상공회의소 제26차 연차총회에서 기본문서로 채택된 것이 「제4의 물결」이라는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허드슨연구소의 허만 칸 박사는 자원봉사가 세기말적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21세기를 대비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를 ‘제4의 물결’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최근 우리 사회도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론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고, 자원봉사의 범위와 영역이 확대된 계기는 1988년 서울올림픽이라 할 수 있다. 서울올림픽 전후해서 자원봉사가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이라는 한정된 개념에서 지역사회발전에 조력하는 모든 활동으로 그 영역과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여성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1995년 5. 31교육개혁 조치로 청소년자원봉사가 제도화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다. 또한, 다양한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자원봉사 관련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당시 자원봉사 관련법 제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즉, 자원봉사와 관련된 법체계를 가진 나라도 많지 않고, 민간의 자발성에 기초한 자원봉사를 법제화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 주도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자원봉사 정신에 부합하는가?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10여년 간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시민사회 발전에 관하여 발제자들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화되고 분절된 시민사회조직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 공익증진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한정된 정부예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정선애 센터장님의 발제문 규율대상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자원봉사단체 등 10여개의 법인이나 단체라고 되어 있다.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지향점은 같지만 각각의 다른 이념과 목적을 위해서 설립되고, 관련 법률도 다양한 데 이것을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의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할 당시 논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 한 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하는 데 10여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2016년 5월 4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TF 모임을 시작으로 금년 정기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섹터간(영역간)의 공감대 형성, 영역간의 협력방안,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익증진 위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간담회 토론문

김종남(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김성국(2006) 등은 초기민주주의 성장과정에서는 시민사회의 급진적 저항성이 더욱 필요했다면 민주주의 심화 혹은 성숙과정에서는 타협적 저항성이 요청된다. 시민사회는 국가권력의 공유를 위한 시민참여를 추구하면서 국가와의 타협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다. 타협없는 저항이나 투쟁은 실익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김성국 외 2006. 21세기 한국사회발전모델: 민주화와 세계화의 전망과 전략.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민주주의 형식적 제도화가 진전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을 위시해 시민사회 영역에서 적극 조직해온 마을자치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가 확충돼 시민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꾸준히 확대돼옴. 민간의 활력을 통해 지체된 민주주의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신장돼왔으나 국가정책의 주요 방향과 내용, 자원배분에 적극 개입하고자 하는 정치적 효능감을 직접적으로 향유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

또한, 다양한 시민활동의 결과가 통합적 삶의 질, 행복도 제고로 구현돼야 할 공간으로서 지역에서조차 영역별 지원제도의 한계와 폐쇄적, 권위적 행정으로 지원효과가 분절화돼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비판/주창형 시민운동의 정체화되는 반면 제도화된 시민활동공간에서 일어나는 자원봉사나 마을만들기, 사회경제경제 활동이 관계적, 토착적 이해관계를 뛰어넘기 어려운 현실여건들이 결합돼 기본법 제안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됨

○ 그러나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법과 제도에 의해 발전시킨다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러한 제도화가 궁극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혹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확산할 가능성은 없는지 생각해봐야함. 국가재정을 통해 활동을 지원받으면서 규제와 간

섭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음. 공공재정을 통해 직접적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공공재정을 시민이 참여해 배분하고 집행하며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주체성이나 정치적 효능감에서 차이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기본법을 통해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민관 협력적 국가운영체제의 수립인지 시민활동지원제도의 강화인지 분명히 할 필요. 그래야 법 제정 취지와 핵심내용을 잘 담을 수 있고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설득도 가능할 것임

○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을 국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꾀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식민화, 자율적 시민활동의 체제내화를 확대할 가능성 존재.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연대의 원리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공공 영역에서 힘을 발휘하고 행복추구권을 시민 스스로의 결정권과 책임에 의하도록 국가운영체제 및 시민활동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이러한 취지에서 기본법 관련 몇 가지 제안 하면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란 명칭은 공익활동 지원법이나 공익적 시민활동 지원법이란 명칭으로 변경해 법안의 취지에 대한 오해 불식시킬 필요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등 다양한 활동영역을 포괄하는 기본법적 형태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활동이 구체화되는 현장 즉, 주민자치가 일어나는 마을단위를 중심으로 지원제도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설계돼야 할지를 상정하여 틀이 만들어져야 함

영역을 다 포괄, 기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실제 법적 기능을 할 수도 없으므로 단위영역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 정하되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원칙들을 모아 놓는 방식 검토. 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와 거버넌스, 시민에 의한 소요재원의 결정 및 배분, 독립적 자원확보 및 자주적 운영, 시민에 의한 정책성과평가 등으로 경제적 효율성 이외의 정책효능감과 시민의 행복도와 만족도가 향상되는 공익적 시민활동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①시민의 의사결정권한 확대와 관련;

시민의회(민회, 타운미팅 등) 운영 제도화로 정책현안에 대한 심의권 및 의제 제안권 부여, 영역별로 분절화된 예산을 지역에서 통합해 재분배하는 방식 도입과 통합평가, 형식적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대상예산규모 증액, 정부와 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심의권에 대한 국민투표 제도화, 의회심의 주요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도입 등 직접민주제도 강화, 시민의 정책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정책우선순위 결정 및 평가로 경제적 효율성 중심 정책심의·평가제도 개선 등

②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론장 확충 및 활성화 관련;

개인화, 분절화된 사회에서 분출되는 이익과 가치의 다양성과 갈등을 시민 스스로 다루는 자치역량 강화 위해 공론화 절차 확립 필수적. 정책현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이행 절차 마련, 시민의회의 지역적 운영 제도화, 지역언론의 공공저널리즘 지원제도 실질화 등 민주주의의 성숙과 시민참여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와 요건 강화

③시민자율활동을 위한 자원 등 재정적 지원 관련;

운영/인건비 지원의 경우 정부간접배제 불가하므로 우회적 지원으로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하도록 함. 활동가 인건비와 조직활동경비는 자율적 결사체로서의 독립성, 조직의 문제해결능력 및 책임성 유지 위해 자체 충당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공익적 시민활동조직의 공간 및 운영관련해서는 공공건물 및 민간소유의 건물을 국가가 매입해 무상제공하고 에너지자립시스템 등을 도입해 실질적 사무실 운영경비를 0화 하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

개별조직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공익적 시민활동가의 양성 및 재교육 제도 마련, 시민활동가 복지증진 위한 공제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시민재단 설립하고 정부출연 등을 명시한 바 공익활동지원재단으로 목적 드러나게 하고 기업의 참여 제도화할 필요. 관련 기부금품모집법 개정,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제도 개선(시민사회단체 기부금 100% 인정)

○기본법 제정 취지가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에 더 많은 권한 위임해 공익과 시민사회 활력을 증진하기 위함’으로 돼 있으나 기존의 시민운동중간지원기구 법제화와 의결기구화 등 권한강화가 중심이고 시민참여형 국가시스템 혁신 내용은 없으며, 제도화된 시민활동영역으로서 사회적경제나 자원봉사, 마을자치영역을 기본법에 포괄할 경우 영역 갈등의 외화 가능성, 중앙과 지역의 자원불평등 요소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우려도 존재해 법안의 명칭부터 기본원칙을 구체화하는 실천전략과 의사결정체계, 지원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개인적, 집단적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법안의 특성상 기존 법령들의 체계나 시야를 답습하지 않기 바람



A series of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consisting of 20 evenly spaced lines.

MEMO



A series of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consisting of 20 evenly spaced lines that provide a template for text entry.



A series of horizontal lines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the memo content.



A series of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consisting of 20 evenly spaced lines.

